

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-0377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.11.25.

국가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취지

현행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전기그라인더 분야(KC 60745-2-3)는 그라인더와 연마재를 나사로 결합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기준이 규정되어, 커플러와 디스크홀더를 활용한 ‘원터치 그라인더 결합’이라는 새로운 결합방식 개발하였으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,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 표준을 부합화 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1)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

순번	구분	안전기준 번호	안전기준명
1	개정	KC 60745-2-3	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-3부 : 전기그라인더, 폴리셔 및 디스크 샌더의 개별 요구사항

2)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(신기술 적용) 신기술 원터치(커플러, 디스크홀더 착탈방식) 전기그라인더 제품 출시지원을 위해 안전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변경 및 추가, 기술 적용을 위한 시험 방법 추가
- 나. (최신 국제표준 반영) 최신 국제기준(IEC 60745-2-3) 부합화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www.kats.go.kr → 고시·공고)

3. 의견제출
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- 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- 라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
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: 043-870-5446 (FAX: 043-870-5676)
- 전자우편: salvatore@korea.kr